

2026년도 출자·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509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5. 11. .
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의 규정에 따라, '26년도 당초예산'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한 평창군의회 동의의 필요성을 언급함

2. 제안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3. 출연개요

(단위: 천원)

순번	출연기관	출연금	주요사항
계	7	8,950,968	
1	강원연구원	50,000	평창군 중장기 비전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·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협력사업비 지원
2	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	3,324,200	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학기금 출연
3	한국지방세연구원	4,206	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
4	강원도관광재단	30,000	효율적 관광정책 실행 및 종합적 관광서비스 제공, 지역관광 진흥 추진을 위한 재단 운영비 출연
5	평창관광문화재단	2,743,551	관광·문화·축제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인 평창관광문화재단 출연
6	평창유산재단	1,799,011	지속가능한 올림픽 유산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재단 운영비 출연
7	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	1,000,000	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및 지역 농특산물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한 재단 운영비 출연

강원연구원 협력사업비 출연 동의안

주관부서	기획예산과	'26년 출연예상액	50,000천원
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인명: 재단법인 강원연구원(원장 배상근)
- 일반현황
 - 개원: 1994. 9. 1.
 - 설립근거: 「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「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」
 - 소재지: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박사로 880
 - 조직: 1실, 1국, 5부, 6센터, 5팀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2026년 출연예정금액: 50,000천 원
- 강원연구원 주요사업 내용
 - 시군 맞춤형 정책지원서비스 제공(정책 과제 1건, 현안 과제 2건 연구용역)
 - 네트워킹 사업 주관
 -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한 도내·외 외부 기관과 가교역할
 - 시군 현안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 포럼, 정책콘서트, 세미나 등 개최
 - 시군 1:1 전담 서비스 제공
 - 지역별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정책 자문 서비스 제공
 - 정책동향 분석자료 정기 제공 및 공모사업 유치 지원
 - 정부 및 도 주요이슈·동향, 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 동향 모음집 제공

□ 출연 필요성

- 강원특별자치도 대표 연구기관으로 중장기 비전 및 주요 정책개발 과제 수행에 따라 우리 군과 연계된 핵심정책 개발이 가능
- 주요 정책·현안 대응성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조사·연구를 위한 정책 자문기구 필요

□ 출연 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- 행정안전부

제13조(운영재원)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.

- 「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」 - 강원특별자치도

제4조(기금)

- ①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"강원연구원 육성기금"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도와 시·군 및 그 외의 출연금,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.

제5조(운영경비)

-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과실 및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.
- ② 도 및 시·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□ 산출내역

- 출연액: 50,000천 원
 - 공모사업 동향 분석자료 제공(월 4회)
 - 정책 연구과제(1건) 현안과제(2건) 용역수행, 포럼 등 실시(1회)
 - 전담 정책자문창구(코디네이터) 운영 등

□ 출연 기대효과

- 군 역점사업 실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지원 강화
- 정책 환경변화 선제적 대응 및 공모사업 유치지원
- 정책·현안 대응성 및 활용도 높은 조사·연구로 자문기능 강화
-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(포럼 등)

- 25년도에는 대학생 등록금과 더불어 생활비장학금, 중·고등학생을 위한 레벨업 장학금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였고, CI개발, 카톡 채널 오픈, 재단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재단의 정체성과 소통을 강화하였음.
- 장학재단의 다각적인 교육지원 사업으로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, 다양한 학습지원을 통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장학기금 출연이 필요함.

□ 세부내역(출연금 3,324,200천원)

구 분	주요 내용	금액(천원)	비고
계		3,324,200	
장학사업	·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(초·중·고·대)	3,072,000	
	· 인재육성사업(화상영어 등)	150,000	
기타 목적사업	· 재단 홍보물, 명예의전당 명패 제작	30,000	
재단 운영비	· 위원회 수당, 결산수수료, 사무운영비, 여비 등	72,200	

□ 출연시 기대효과

- 대학생 생활비, 스노우 장학금 등 확대로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 여건 조성과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
- 다각적인 인재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적 체계 구축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4조(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과 대상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□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
제4조(설립허가 기준) ① 주무 관청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, 사단법인은 회비·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(財源)의 수입(이하 각 “기본재산”이라 한다)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.

□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9조(출연 등) ① 군수는 장학기금 재원 조성과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.

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

주관부서	세정과	'26년 출연예상액	4,206천원
------	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 인 명: 한국지방세연구원
- 일반현황
 - 설 립 일: 2011. 2. 28.
 - 설립근거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
 - 소 재 지: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
 - 조직구성: 4실 1사업단, 정원 78명 / 현원 64명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'26년 출연예정금액 : 4,206천원
- '26년 주요사업 내용
 - 사용용도: 인건비, 연구사업비, 경상운영비, 시설비 등
 - *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

□ 출연 필요성

-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
-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
-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
-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 및 제도개선 추진

□ 출연 근거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
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동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동하여야 한다.
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동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

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
1. 1만분의 1.2

□ **산출내역**

○ 출연금 산정 :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 × 1.0/10,000

(단위:천원)

'24년 결산 보통세			'26년 출연금
계	현년도	과년도	
42,062,616	40,718,493	1,344,123	4,206

□ **출연 기대효과**

-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기여
- 전문적인 지방세정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및 발전 도모

관계법령 발취

□ 「지방세기본법」
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□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
1. 1만분의 1.2

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

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
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
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
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
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
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

주관부서	관광정책과	'26년 출연예상액	30,000천원
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인명: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(대표이사 최성현)
- 일반현황
 - 설립일자: 2020. 10. 13.
 - 설립근거: 지방출자·출연법 제4조 및 민법 제32조
 - 소재지: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안마산로 89, 세종빌딩 3층(퇴계동)
 - 조직구성: 1본부 3실 8팀(운영인력 35명)
 - 기본재산: 금50,000천원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2026년 출연예정금액: 30,000천원
- 2026년 주요사업 내용
 - 관광정보 조사·분석 및 관광진흥 네트워크 구축
 - 시군 공동 관광마케팅 추진 및 관광콘텐츠 상품 개발
 - 강원관광 통합 홍보 마케팅
 - 국제회의 유치·지원 등 적극 협력 및 공동 대응

□ 출연 필요성

- 효율적 관광정책 실행 및 종합적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·시군 통합형 관광 전문기관으로써
- 도내 관광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강원관광재단을 관내 관광산업의 전략적 추진 기구로 활용하여 지역관광 진흥 및 경쟁력 강화 도모

□ 출연 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평창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」 제4조

□ 산출내역

- 18개 시·군 각 30,000천원 균등 부담

□ 출연 기대효과

- 시·군간 적극 협력 및 공동 대응으로 효율적 관광정책 실행
- 도내 지역 간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관광진흥 교류 통합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과 대상 사업 등)

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獎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□ 평창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조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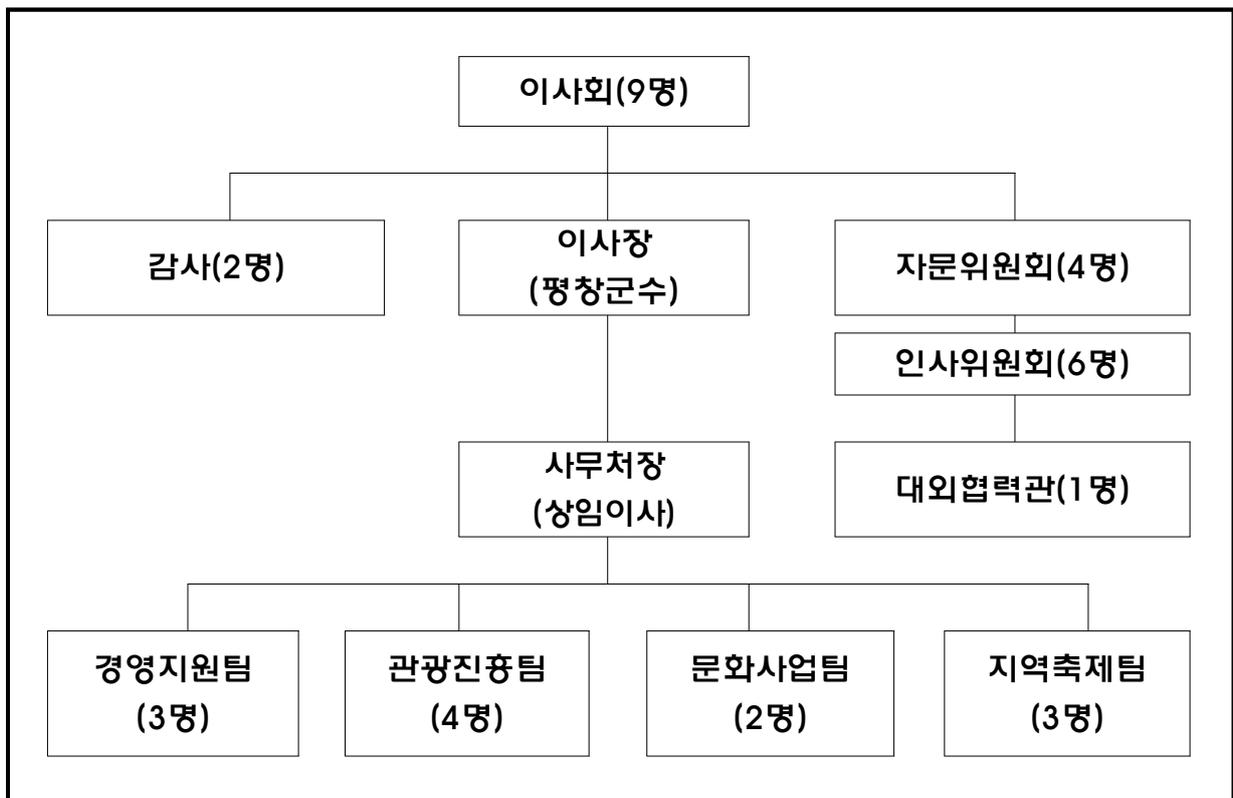
제4조(재정지원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재단법인 평창관광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

주관부서	관광정책과, 문화예술과	'26년 출연예상액	2,743,551천원
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 인 명: 재단법인 평창관광문화재단(이사장 평창군수)
- 일반현황
 - 출 범 일: 2025. 1. 1.
 - 출연근거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 - 소 재 지: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리 1185-5
 - 주요기능: 평창군 관광·문화·축제 전문플랫폼
 - 조 직: 4팀 13명(사무처장 1, 팀장 4, 직원 8) ※ 정원: 24명



※ 대외협력관: 군 파견 5급 공무원, 정원외로 관리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2026년 출연예정금액: 2,743,551천원
 - 관광정책과 2,402,725천원 / 문화예술과 340,826천원
- 2026년 주요사업 내용
 - 관광정책과
 - 관광마케팅 및 관광객 유치 기획, 관광사업 기획자 양성
 - 공연 및 전시사업 등 지역주민 문화사업, 지역 문화예술인 육성·지원
 - 축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, 홍보 마케팅 및 전문가 육성
 - 관광·문화·축제 종사자 전문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
 - 문화예술과
 - 문화예술 기획 및 예술활동 활성화사업
 - 창작스튜디오(생활문화센터) 운영 및 관리
 - K-POP아카데미 운영

□ 출연 필요성

- 재단 청사의 안정적 관리·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(인건비, 일반경비) 확보
- 지역 관광·축제 등 목적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
- 지역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 기반 조성 및 군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
- 군민 문화예술 교육·축제·공연 등을 통한 문화복지 실현
- 문화예술행사와 지역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기여

□ 출연 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○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과 대상 사업 등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1. 문화, 예술, 장학(獎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 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○ 「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출연 및 보조)

-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□ **산출내역**

○ 관광정책과(2,402,725천원)

구 분		비 고
운영비 (1,421,725천원)	<p>○ 재단 인건비: 902,854천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본급: 456,524천원 - 시간외수당: 90,504천원 - 복리후생비: 132,975천원 - 기간제인건비: 38,290천원 - 퇴직급여: 98,054천원 - 경영평가 성과급: 86,507천원 <p>○ 재단 일반경비: 518,871천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운영비: 211,282천원 - 여비: 26,520천원 - 업무추진비: 6,000천원 - 관서업무비: 5,400천원 - 직무수행경비: 3,840천원 - 수선유지비: 34,000천원 	<p>※ 직원 : 14명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급 상임이사 1명 (5급20호봉 기준) - 4급 팀장 3명 (6급17호봉 기준) - 6급 직원 4명 (8급11호봉 기준) - 7급 직원 3명 (9급10호봉 기준) <p>※ 예비비 7급 직원3명 (9급 10호봉)</p> <p>※ 기간제 1명</p>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금부담금: 99,653천원 - 자산취득비: 1,000천원 - 기타: 131,176천원 	
<p>관광·축제 사업비 (981,000천원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창관광문화재단 관광분야 출연금: 541,000천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광문화축제 종사자 교육 및 세미나 개최 15,000천원 - 로컬크리에이터 SNS 서포터즈 양성: 50,000천원 - 평창올림픽 레거시권 활성화 사업(평창스노우 애슬론, 마운틴오리엔티어링): 70,000천원 -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: 160,000천원 - 시티투어 상품 운영: 206,000천원 - 바위공원 힐링프로그램: 40,000천원 ○ 평창관광문화재단 축제분야 출연금: 440,000천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촌클래식축제 지원: 280,000천원 - 평창더위사냥축제 지원: 160,000천원 	

○ 문화예술과(340,826천원)

구 분		비 고
<p>문화·예술 사업비 (340,826천원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문화예술 기획사업: 120,000천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무관리비: 5,000천원 - 심사 및 자문료: 5,000천원 - 문화예술 기획사업: 105,000천원 - 사업 모니터링: 5,000천원 ○ 예술활동 활성화사업: 80,000천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예술인 활동 지원 및 찾아가는 공연, 전시 등 ○ 창작스튜디오(생활문화센터) 운영 및 관리: 80,826천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무관리비: 16,665천원 - 공공요금 및 제세: 64,161천원 ○ K-POP아카데미 운영: 60,000천원 	

□ 출연 기대효과

- 지역 특화 행사 활성화를 통한 주민 참여 확대 및 관광객 유입 증대
- 지역축제 육성으로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
- 창의적 콘텐츠 발굴로 평창군 관광·축제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관광기반 구축
- 다양한 문화 수요 충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
- 지역예술가와 주민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문화복지 실현
- 다양한 문화예술 공모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부흥
- 문화예술 행사와 지역관광·축제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과 대상 사업 등)

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獎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□ 평창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4조(출연 및 보조) 군수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

주관부서	올림픽체육과	'26년 출연예상액	1,799,011천원
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 인 명: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(이사장: 심재국)
- 일반현황
 - 출연근거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7조
 - 소재지: 대관령면 황계리 707(올림픽플라자 내)
 - 조직: 1사무처 3팀(총무기획팀, 올림픽유산운영팀, 올림픽유산사업팀)
 - 주요기능: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 추진, 동계올림픽 유·무형 자산 활용 유산사업, MICE사업 유치 및 발굴, 올림픽도시 및 유관기관·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, 주민참여 유산사업발굴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(재)평창유산재단 운영(1,184,611천원)
 - 인건비, 물건비, 경산이전비, 자산취득비 등
- 올림픽 유산사업(614,400천원)
 - 올림픽 유산교육프로그램 운영(100,000천원)
 - 2026 평창 눈동이 패스포트(220,000천원)
 - 2026 스키점프대 오르기 챌린지(110,000천원)
 -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념사업(66,000천원)
 - 평창올림픽 유산사업 온오프라인 홍보활동(38,400천원)
 - 평창올림픽플라자 기념품 개발 및 운영(80,000천원)

□ 출연 필요성

- 참여형 올림픽 유산사업(눈동이 패스포트, 스키점프대 오르기 챌린지 등)을 통한 주민 자긍심 고취 및 올림픽 도시 이미지 강화
- 기념사업과 온·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한 올림픽 유산의 지속적 발굴·확산 추진
- 올림픽플라자 기념품 개발·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올림픽 브랜드 가치 제고

□ 출연금 지원 근거

- 「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7조」

제15조(운영재원)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
2.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
3. 각종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등

제17조(재정지원) 군수는 재단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□ 산출내역

- 출연금: 1,799,011천원

구분	내 용	
운영비 (1,184,611천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인건비 746,853천원 - 보수(기본급, 수당 등) 602,640천원 - 퇴직급여 58,252천원 - 평가급 85,961천원 ○사무관리비 153,320천원 ○공공운영비 18,400천원 ○교육훈련비 16,400천원 ○복리후생비 35,120천원 ○여비(국내, 해외) 98,000천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업무추진비 12,000천원 ○직무수행경비 33,480천원 ○수선유지교체비 5,000천원 ○관서업무비 4,120천원 ○포상금 500천원 ○사회보험부담금 54,968천원 ○자산취득비 6,450천원
사업비 (614,400천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올림픽 유산교육프로그램 운영 100,000천원 ○2026평창눈동이패스포트 220,000천원 ○2026 스키점프대 오르기 챌린지 110,000천원 ○2018평창동계올림픽 기념사업 66,000천원 ○평창올림픽 유산사업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38,400천원 ○평창올림픽플라자 기념품 개발 및 운영 80,000천원 	

□ 출연 기대효과

- 올림픽 유산의 지속적 계승으로 평창의 국제적 위상 및 브랜드 가치 향상
- 참여형 유산사업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와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
- 관광객 유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 발전 기반 조성

관계법령 발췌

□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□ 「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5조(운영재원)

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
2.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수익금
3. 각종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부금 등

□ 「평창유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7조(재정지원)

군수는 재단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 출연 동의안

주관부서	농산물유통과	'26년 출연예상액	1,000,000천원
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 인 명: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(이사장 임성원)
- 일반현황
 - 설립일자: 2021. 8. 23.
 - 설립근거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 - 운영근거: 「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 - 소 재 지: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2220
 - 운영인력: 1실, 4팀 30명
- 주요사업

[단위 : 천원]

사업명	'24년 매출액	'25년 매출액 (10월까지)	비고 (수수료)
합계	11,619,613	9,090,814	
학교급식사업	3,267,321	2,653,551	-
농산물 위탁판매	6,172,108	4,270,849	0.3%
로컬푸드 직매장	935,999	892,138	10% 내외
온·오프라인 농산물유통	647,584	413,538	10% 내외
경기도학교급식	319,819	600,613	9.8%
공공급식	116,823	140,588	4~10%
마늘가공	31,464	23,269	50% 내외
친환경잡곡 생산·유통센터	-	19,920	10% 내외
고향사랑기부제	128,495	76,348	-

□ 출연 필요성

- 평창 군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
- 평창 푸드플랜의 실행 주체인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지원을 통해 먹거리 공공재로서 역할 강화
-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학교급식, 공공급식, 기획생산 체계구축,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□ 출연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- 「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

-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- ② 군은 재단의 설립·시설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

□ 산출내역

○ 출연금: 1,000,000천원(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비)

○ 인건비 908,411천원

- 임기제 4,750,000원×1명×12월: 57,000천원
- 6급 팀장(16호봉) 3,933,600원×1명×12월: 47,204천원
- 6급 팀장(14호봉) 3,758,500원×1명×12월: 45,102천원
- 7급(13호봉) 3,309,500원×1명×12월: 39,714천원
- 8급(12호봉) 2,889,200원×1명×12월: 34,617천원
- 8급(11호봉) 2,804,500원×1명×12월: 33,654천원
- 8급(8호봉) 2,533,700원×3명×12월: 91,214천원
- 8급(9호봉) 2,628,300원×1명×12월: 31,540천원
- 9급(7호봉) 2,197,300원×1명×12월: 26,368천원
- 9급(6호봉) 2,146,800원×1명×12월: 25,762천원
- 실무직(6호봉) 2,140,000원×1명×12월: 25,680천원
- 실무직(5호봉) 2,096,000원×5명×12월: 125,760천원
- 실무직(4호봉) 2,058,000원×1명×12월: 24,696천원
- 실무직(3호봉) 2,019,000원×1명×12월: 24,228천원
- 실무직(2호봉) 1,980,000원×2명×12월: 47,520천원
- 기간제근로(5시간) 1,400,000원×5명×11월: 77,000천원
- 기간제근로(8시간) 2,156,880원×1명×12월: 25,883천원
- 정액급식비, 정근수당, 가족수당, 연차수당, 시간외수당 등: 125,469천원

○ 일반운영비 91,589천원

- 사무관리비(일반수용비, 임차료, 운영수당 등): 34,389천원
- 공공운영비(공공요금 및 제세, 시설·장비 유지비 등): 57,200천원

□ 기대효과

- 평창 푸드플랜의 실행 주체인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통해 먹거리 공공재로서 역할을 강화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속가능한 평창군 농업·농촌 환경 조성
- 평창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인식하고 생산·소비·복지·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상호 연계하는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4조(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 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□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② 군은 재단의 설립·시설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.